

세븐브로이-대한제분, 중기부 조정위원회 통해 분쟁 해소

- 분쟁 발생 3년만에 조정통해 최종 종결... 갈등 해결 모범사례
- 양측 간 제기된 소송 및 신고 취하,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출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아래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양측의 기업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분쟁 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세븐브로이와의 상생에 힘쓰기로 하였다.

한편,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국회, 민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조정 합의와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을 개최하였다.

대한제분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은 세븐브로이의 경영안정,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폭넓게 쓰여질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있는 사례”라며, “이러한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한편,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하면서 직권조정·1인조정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기술혁신정책관실 기술보호과	책임자	과 장	김성훈	(044-204-7780)
		담당자	사무관	차상훈	(044-204-7785)
			사무관	정가훈	(044-204-7781)
협력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분쟁지원부	주무관	김선영	(044-204-7788)	
		책임자	부 장	최재혁	(02-368-8422)
		담당자	차 장	신용준	(02-368-8768)

참고1 상생협력기금 출연식 계획

□ 목적

- 세븐브로이-대한제분 간 분쟁의 최종 합의에 따른 후속으로 상생협력기금 출연식 개최

□ 출연식 개요

- (일시·장소) '26.4.16(목) 09:45~10:20 / 정책위원회의실(의원회관 306호)
* (주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 (참석) (黨) 민주당 민병덕의원(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송재봉의원, 민주당 이강일의원, 민주당 김남근의원, 조국혁신서왕진의원, 국회의장실 이원정 정책수석, (政) 중기부 장관, (民) 양 기업 대표, 대중소협력재단, 재단법인경청 등
* 참석의원은 의원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성 有
- (주요내용) 인사말씀, 상생협력기금 소개 및 활용계획 보고,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 등

□ 진행순서

(사회 : 중소벤처기업부)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0:05~10:10	5' ■ 상생협력기금 소개 및 활용계획	사회자
10:10~10:15	5' ■ 상생협력기금 출연 서명	참석자 전체

참고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개요

□ 상생협력기금 개요

- (개념)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
- (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이하 상생법)」 제20조의5
- (지원대상) 상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 (용도) 출연기업이 용도와 사업을 지정 →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창업지원 등에 활용(상생법 제20조의5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

상생협력법	제20조의5(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2.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3. 대·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4. 대·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5.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4(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법 제20조의5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 4. 대·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5.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지원 사업 6.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 상생협력기금 출연 및 지원현황

- '25년 출연금액 2,730억원('24년 대비 17.5% ↑), 지원금액 2,995억원 (중소기업 126,099개사)
* ('11~'25년) 누적 492개사 31,618억원 출연, 28,986억원 지원(中企 851,187개사)